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 20   년   월   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대출/의료대출/재해대출로 대환신청합니다.

○ 계약자 정보

인 적 사 항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공제계약번호	
	주 소			
	휴대번호		E-mail	

○ 대환대출 신청

대출 종류			
대환대출 신청액	금	원 (₩	)

- ※ 대출한도는 납부부금 합계액과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대출한도 내에서 의료대출은 최대 1천만원, 재해대출은 최대 2천만원과 재해확인서상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하며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대환이 결정된 경우 기존 대출금을 신규 1건으로 통합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내용 변경 신청

구분	신청 내용		
대출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자수납일	매월 (   ) 일		

○ 기존대출 상환신청

No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이율	연체여부	상환신청
1					
2					
3					
4					

약  
정  
서

제1조(대출신청자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미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2조(대출기간) 대출기간(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은 일반대출은 1년, 의료대출은 1년, 재해대출은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대출금이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됩니다.

제3조(상환방법) 대출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4조(대출이자) ①일반대출의 대출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일자(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대출일이 해당한 월의 다음 월부터 최초 납입합니다.  
 ②이자납부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이자를 대출 원금에 합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미납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납부일마다 재청구합니다.  
 ④대출시행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합니다.  
 ⑤대출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출이율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공제소개-기준이율공시-대출이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⑥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의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 최초 대출기간내 미상환시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미납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